

日本の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険에 관한 少考

申 杞 澈

(財務部 保険局・保険計理人)

◀ 目 次 ▶

- I. 머릿말
- II.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険의 概要
 - 1. 日本 傷害保険의 積立商品 開發動向
 - 2.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険의 概要
 - 3. 生命保険의 個人年金과의 比較
- III. 事業方法書의 主要內容
 - 1. 事業方法書의 形態 및 認可方法
 - 2. 事業方法書의 記載內容
 - 3. 事業方法書의 主要記載事項과 關聯制度 檢討
- IV. 普通約款의 主要內容
- V.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 算出基礎의 主要 內容
 - 1. 保險料 算出基礎
 - 2. 責任準備金 算出方法書
- VI. 맺음말

I. 머릿말

長期損害保險은 대부분이 일반가계 또는 소형점

포를 대상으로 하는 貯蓄性 保險으로 모집인위주의 판매체제에 적합하며 貯蓄性 部分때문에 損・生保間 領域問題가 자주 제기되는 분야이다.

長期損害保險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영위되고 있는 保險期間이 長期이고 貯蓄性 機能을 가진 상품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반 損・生保間 領域分爭으로 수년간 신규상품에 대한 인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88년 3월 長期損害保險 商品開發基準의 제정으로 이후 신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졌으나 아직도 保險期間이나 還給率 등의 제한에 대해서 손보측에서 지속적으로 이의 완화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日本은 공식적으로 長期損害保險의 보험기간, 환급율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우리나라보다도 보험기간이 비교적 長期이고 變動金利制度의 적용, 積立型 特約의 開發, 介護保險의 許容 등 의견상 상당히 활발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한 예로서 1992년 7월부터는 保險期間이 長期가 아니고서는 영위가 불가능한 個人年金分野의 新商品인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損害保險 각사에서 예전부터 個人年金市場에 참여를 희망하던 차에

積立傷害保險의 기능을 가미한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을 개발·판매하게 된 것이다. 이는 保險審議會 報告書에서 손·생보 참여의 촉진을 권유한 만큼 『보고서』에 대한 대응상품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동상품에 대한 事業方法書, 保險約款, 算出基礎 등에 대해 실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비교·소개하면서 관련되는 制度 등에 대한 고찰을 병행하고자 한다.

II.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의 概要

1. 日本 損害保險의 積立商品 開發動向

(1) 開發經過

일본에서 積立型 保險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63년 4월의 화재상해보험이었으며 이후 1963년

의 건물갱신보험, 1968년의 장기종합보험, 1974년의 저립패밀리교통상해보험, 1984년의 저립단지보험, 1986년의 저립보통상해보험, 1990년의 저립노동재해종합보험, 1991년의 저립신생활상해보험과 연금지급식 저립상해보험 등으로 새로운 상품개발이 이어져 왔다.

상품종류는 우리나라가 擔保危險에 따라 “火災, 傷害, 綜合”으로 나누는데 반해 “火災, 傷害, 其他”로 구분한다. 또한 貯蓄性 保險料 部分의 조립 형태에 따라 완결형과 저립특약형(積特型)으로 구분되고 豫定利率의 적용형태에 따라 固定金利型和 變動金利型으로, 特別計定の 적용구분에 따라 1-5호로 구분된다.

擔保危險이나 商品構成, 豫定利率, 特別計定の 성격 등에 따라서 최근까지 개발된 대표적인 상품들의 구성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丑-1〉

日本 損害保險의 主要 積立商品別 分類

상 품 명	개발년도	담보위험	상품구성	예정이율	특별제정
장 기 종 합 보 험	1968	화재	완결형	고정	1호
저립패밀리교통상해	1974	상해	완결형	고정	1호
저립동산종합	1984	기타	완결형	고정	1호
저립보통상해	1986	상해	적특형	고정	1호
저립가족상해	1986	상해	적특형	고정	1호
재형상해보험	1988	상해	완결형	고정	2호
저립어린이보험	1988	상해	적특형	고정	1호
저립부부 pair 종합	1989	상해	적특형	고정	1호
신저립여성	1989	상해	적특형	고정	1호
저립생활종합	1989	화재	적특형	고정	1호
저립안심생활상해	1990	상해	적특형	변동	4호
저립노동재해종합	1990	기타	적특형	고정	1호
저립소득보상보험	1990	기타	적특형	고정	1호
저립개호비용보험	1990	기타	적특형	고정	3호
저립신생활상해보험	1991	상해	적특형	변동	4호
저립행복가정보험	1991	화재	완결형	변동	4호
건강미래저립상해	1992	상해	완결형	고정	1호
연금지급식 저립상해	1992	상해	완결형	고정	5호

(2) 最近의 積立商品 開發動向 및 主力市場

최근의 積立商品의 開發動向은 시장특화, 일반 보험의 적립상품화, 변동이율제도의 도입, 만기일 지정방식 등을 이용한 적립기능의 다양화 도모 등을 꼽을 수 있다.

첫번째, 市場特化를 들 수 있다. 日本의 積立商品의 市場特化는 여성(74년, 84년, 89년), 어린이(87년), 청년(88년), 부부(89년), 청장년 및 노년(90년)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상의 특화는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두번째, 일반보험(非積立型)의 積立商品化를 들 수 있다. 日本의 적립상품은 補償部分과 積立部分의 분리여부에 따라 完結型和 積特型으로 구분되며 보상과 적립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積特型은 일반보험(非積立型) 보통약관에 적립특약을 첨부한 것으로 '86년 11월 적립보통상해, 적립가족상해에

서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는 積立商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積立特約이 도입된 배경은 既存約款을 원용함에 따라 상품개발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一般保險의 판매분석을 통해 합리적 개발이 가능하며 시스템 개발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었고 각종의 非積立型 商品과 세트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계약자니드에의 대응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세번째, 變動利率을 도입한 高收益商品의 도입을 들 수 있다. 日本 損害保險의 積立商品의 豫定利率은 固定利率이 주류를 이루나 '90년 이후 변동이율상품인 SUPER형 상품이 개발되었다. 이는 고정이율상품의 豫定利率(4.5%-5.0%)에 비해 개발 당초에서 '91년말까지는 1%-2%까지 豫定利率을 높여줌으로써 크게 호평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金融市場의 沈滯로 利率이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2)

日本 損害保險 積立商品의 豫定利率 推移

(단위 : %)

구 분		'87.5월 이 전	'87.5 ~ '90.3	'90년 4월 이후					
				'90.7	'90.9	'91.4	'91.11	'92.2	'92.9
고정이율	5년 미만	5.0	4.0	4.5	-----→				
	5년 이상			5.0	-----→				
변동이율	3년	-		6.0	6.5	6.0	5.5	5.2	5.0
	5년			6.0		5.5	5.2	5.2	

주) ① 固定利率商品의 경우 積立型 傷害와 積立型 火災의 변경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음.

② 變動利率商品은 SUPER형 상품으로 '92년 9월 이후의 利率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음.

네번째, 満期日 指定方式 등 積立機能의 다양한 특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日本의 新商品開發 動向은 『대상의 특화(위험의 특화)→이율의

변화→새로운 저축기능의 도입』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즉 特化의 終了 및 新規危險의 創出의 限界에 따라 收益性 提高의 方向으로 전환

한데 이어 積立機能에 대한 계약자의 다양한 니드를 이끌어 내는 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滿期日指定方式의 導入(三井海上의 FLEX, '92년 6월 인가)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契約者가 가입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滿期日을 자유로이 지정하는 변화를 기존의 積立商品에 두는 것이다.

2.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의 概要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은 '92년 7월 15일 인가를 받아 동년 11월부터 판매개시된 損害保險의 年金型 長期傷害保險이다. 日本 損害保險은 生保領域으로 분류되던 年金保險이 保險審議會 答申('92년 6월)에 의해 積立傷害의 한 유형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해석됨에 따라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성격상 終身保險은 생명보험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保險期間이나 年金支給期間은 제한되었다. 즉 불완전한 형태의 年金保險으로 출발한 것이다.

또한 最高의 豫定利率을 적용하여 생명보험과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였다. 保險期間 5년 이상의 既存商品 豫定利率은 5%-5.2% 수준이나 동상품의 豫定利率은 5.5%를 사용하였다. 아래에서는 상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種類：年金支給方法에 따른 分類

가. 確定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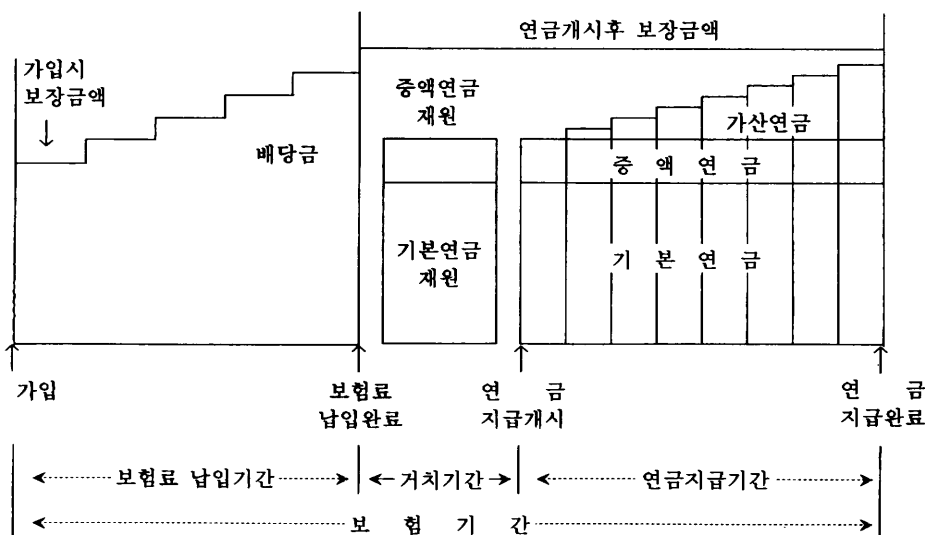
全損으로 인한 종료를 제외하고 被保險者의 生存에 관계없이 계약시 설정된 기간동안 年金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나. 保證期間付 有期型

약관상 정해진 보증기간 동안은 確定型和 같이 被保險者의 生死에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 나머지 지급기간동안에만 연금이 지급되며 이 경우도 非保證期間은 終身이 아니다.

(그림-1)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의 概念圖(確定型 定額支給 基準)



(2) 保障内容

基本契約에서 All Risks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보상되며 特約으로서 입·통원보험금, 일상생활 배상책임과 휴대품 손해 등이 보상된다. 死亡·後

遺障害保險金は 保險料 納入期間동안 매년 증액되며 年金개시 이후에는 一定額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표-3〉

保險期間別 保障内容

제 1 보험년도	연금지급개시년도 보험금액의 30%
최종보험료 납입년도 이후	연금지급개시년도 보험금액
제 1 보험년도 이후 최종보험료 납입년도까지	제 1 보험년도의 보험금액 + 가산액

* 가산액의 계산

$$\frac{\text{최종보험료납입년도 보험금액} - \text{제 1 보험년도 보험금액}}{\text{보험료납입기간} - 1\text{년}} \times (\text{해당보험년도} - 1\text{년})$$

(3) 年金의 支給方法

年金의 支給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연 2회, 4회, 6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월 支給型은 영위하지 않고 있다. 지급되는 年金은 基本年金, 増額年金, 加算年金의 합계액이다.

基本年金의 支給方法은 定額支給과 定額遞増支給, 定率遞増支給의 세가지가 있다.

(4) 商品運用上の 各種 制限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은 생명보험에서 영위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年金은 아니며 年金支給期間, 保險期間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품운용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표-4〉 各 年金의 支給財源

기본연금	가입시에 결정한 금액
증액연금	연금의 지급개시일전까지의 계약자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증액분
가산연금	연금 지급개시이후의 운용익에 의한 계약자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가산분

〈표-5〉 各 年金의 支給方法

정액지급	제1회 기본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
정액체증지급	매년 제1회 기본연금액의 5%를 체증 지급
정율체증지급	매년 전회 지급연금액의 5%씩을 체증 지급

〈표-6〉 商品運用上の 各種 制限

보험료납입기간		6년이상 40년이하의 정수년
거 치 기 간		0년이상 5년이하의 정수년
연금 지급 기간	확 정 형	5년이상 20년이하의 정수년
	보증기간부 유 기 형	15년(보증기간이 10년인 경우) 20년(보증기간이 15년인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 연령		50세이상 70세이하
연금지급 개시 연령		55세이상 70세이하
연금지급 종료 연령		80세이하
보 험 기 간		10년이상 50년이하의 정수년

(5) 保險數理上の 特徴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의 보험수리상의 특징

은 우선 豫定利率이 5.5%로 기존의 積立商品보다 높게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生命保險의 個人年金의 豫定利率(5.5%)과의 競爭力 確保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 保證期間付 有期型의 경우, 非保證期間에 대해서는 생존여부를 연금의 지급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生命表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즉 傷害死亡과 같이 保險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疾病死亡과 같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의 제 17회 생명표를 가공하여 豫定契約消滅率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3. 生命保險의 個人年金과의 比較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을 생명보험에서 영위하는 순수연금과 保障內容, 豫定利率, 契約條件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7)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과 個人年金과의 比較

구 분		연금지급식 적립상해	생명보험의 개인 순수연금
개 념 도 (확정형 기준)			
보상 측면	보 장 기 간	가입부터 연금지급종료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상 해 사 망 질 병 사 망 후 유 장 해	사 망 보 험 금 해 약 환 급 금 후 유 장 해 보 험 금	사 망 보 험 금 사 망 보 험 금 고도장해시 보험료납입면제
예 정 이 율		5.5%	5.5% 단, 계약부터 연금개시까지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는 연금개시전까지 5.75%임
계 약 자 배 당 금		이차배당만을 지급	3이원의 배당과 12년이상 유지계약에 대해서 특별배당
건강상황의 고지		필요없음	필 요
계약 조건	연금의 종류	확정형, 보증기간부 유기형	확정형, 보증기간부 종신형
	연금지급방법	정액, 정액체증, 정율체증	정액, 정액체증, 정율체증
	제 약 연 령	30세이상 64세이하	18세이상 85세이하
	연금개시연령	55세이상 70세이하	50세이상 86세이하
	연금종료연령	80세이하	종 신
보험 료 수준 비교	30세가입 60세연금개시	6,980엔	7,392엔
	50세가입 60세연금개시	33,690엔	34,176엔

주) ① 보험료는 10년확정, 즉시지급, 기본연금 60만엔 확정지급형을 기준

② 안국화재(주) 보험수리실 제공

Ⅲ. 事業方法書の 主要內容

1. 事業方法書の 形態 및 認可方法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長期損害保險은 “長期火災保險”, “長期傷害保險”, “長期綜合保險” 등 세 가지 保險種類別 事業方法書を 사용하고 있으며 보험종목별로는 별개의 사업방법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長期損害保險을 개발할 때는 해당 保險種類別 事業方法書, 예를들면 장기손해 보험 사업방법서 제4조(보험의 종류) 및 제19조(특약의 종류)에 신설되는 보험종목과 특별약관 또는 추가약관의 명칭만 기재하면 되었으므로 보험상품 인가시에 保險種目別로 事業方法書を 일일이 인가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반하여 日本의 長期損害保險에서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를 사용하고 있다. 즉 신규 보험종목마다 별도의 사업방법서를 가지고 있는 바 代

理店 手數料, 集金代行人의 手數料 등에 대해 일일이 사업방법을 인가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代理店 手數料나 被保險者の選擇 등 세부적인 사항은 基礎書類의 인가후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事業方法書の 記載內容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의 事業方法書는 총 15장 31조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長期損害保險의 標準事業方法書는 13장 30조로 구성되어 있다. 長期損害保險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독특한 상품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것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그 형식이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의 事業方法書와 우리나라 長期損害保險의 標準事業方法書を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8〉

事業方法書の 記載內容 比較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	長期損害保險 標準事業方法書	비 고
제1장 사업경영의 지역, 피보험자의 범위 및 보험종류의 세칙 1. 사업경영의 지역 2. 피보험자의 범위 3. 보험종류의 세칙	제1장 사업경영의 대상지역 피보험자 및 보험의 목적의 범위와 보험종류의 세목 1. 사업경영의 지역의 범위 2. 피보험자의 범위 3. 보험목적의 범위 4. 보험의 종류	일본은 종목별 사업방법서이므로 보험의 종류가 필요없음
제2장 지점 그외 사무소 및 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사항 4. 지점 그외 사무소의 권한	제2장 지점, 영업소와 출장소 및 대리점의 권한 5. 지점의 권한 6. 영업소 및 출장소의 권한	

[illegible]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	長期損害保險 標準事業方法書	비 고
19. 계약자배당 제10장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른 대출에 관한 규정 20. 보험약관상 대출 제11장 보험금액, 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21. 보험금액의 변경 22. 보험종류의 변경 23. 보험기간의 변경 제12장 위험의 분포 및 피보험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24. 위험의 분포 25. 피보험자의 조사 제13장 대리점의 종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26. 대리점의 종류 27. 대리점 수수료 제14장 집금대행인의 권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8. 집금대행인의 권한 29. 집금대행인의 수수료 제15장 특별제정에 관한 사항 30. 특별제정의 설치 31. 특별제정에 속하는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	22.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 제10장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 23. 약관대출 제11장 보험계약의 변경 24. 계약내용의 변경 제12장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 25. 위험의 선택과 분산 26. 보험목적의 조사 제13장 기 타 27.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대표자 28. 연령계산 29. 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30. 시효	 포괄적으로 규정 우리나라는 회사내부 규정에 의함

3. 事業方法書の 主要記載事項과 關聯制度 檢討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의 사업방법서중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長期傷害保險의 사업방법서와 비교해서 독특한 조항은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의 제한, 보험기간의 제한, 기본급부금의 지급, 보험계약의 특약중 집금사무비용에 대한 규정, 계약자배당, 약관대출, 대리점수수료, 집금대행인의 수수료, 특별계정의 설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이다.

아래에서는 위의 각 독특한 條項의 內容과 關聯制度에 대하여 우리나라와의 비교의 편의를 위해 우리나라의 “長期傷害保險 事業方法書”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被保險者의 範圍

원칙적으로 傷害保險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傷害保險에는 自然人이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고 가입연령 등은 사업방법서상 제한이 없고 會社 内部의 引受指針 등에 의해서만 제한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日本의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에서는 동 상품의 주목적이 노후의 연금지급에 있으므로 被保險者의 범위를 “만 30세 이상의 자연인”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았다.

(2) 保險金額의 制限

保險金額의 制限은 제6조(보험금액의 제한)에 의해 피보험자 1인당 받는 保險金額은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소득 및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會社의 被保險者 1인당 保有限度는 보험계약 체결시 회사의 “總資産의 1,000분의 0.5”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건별 보유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반해 보험종목별로도 “保有限度”에 관해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保險期間의 制限

保險期間은 5년이상 50년이하의 정수년으로 하고 있다. 年金保險의 특성상 보험기간의 長期化는 불가피하나 損害保險의 특성을 감안하여 생명보험과 같은 “終身年金”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長期損害保險 商品開發基準에 純粹保障性을 제외하고는 보험기간이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年金型 商品의 開發은 할수없도록 되어있다.

(4) 基本給付金の 支給

基本給付金は 보험수익자가 받게 되는 이 상품의 핵심부분인 年金額을 말하고 있으며, 普通約款 제16조(당회사의 지급책임-기본급부금의 지급) 내지 제19조(기본급부금의 청구)까지의 규정에 대한 事業方法을 지정한 것이다.

첫째, 基本給付金の 支給期間은 5년이상 20년 이하로 하여 期間確定型의 形態를 취하고 있고, 급부개시일의 被保險者의 年齡은 만 55세이상 71세미만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보험기간 만료일에 피보험자의 연령은 만 81세미만으로 하였다.

두번째, 基本給付金の 種類가 保證期間付 有期型일 경우 보증기간은 급부금 지급기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급부금 지급기간부터 5년을 감한 이상의 정수년으로 하고있다.

세번째, 最終 保險料納入期日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말일부터 급부금 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즉 보험료 납입완

료후 연금지급개시시기까지의 据置期間을 5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상기의 급부금 지급개시 연령, 보증기간, 거치기간의 제한은 동 상품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연금의 목적으로만 판매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야 한다. 즉 우리나라 生命保險會社에서 공통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老後福祉年金과 같이 연금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 保險契約의 特約中 集金事務費率에 관한 사항

保險契約의 特約은 보험금 등의 분할지급 등에 관한 특약, 단체취급에 관한 특약, 소송의 제기에 관한 특약의 세가지로 주로 보험가입의 편의를 위한 特別約款으로서 [보통약관+특약 3종]의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중 團體取扱特約에 가입한 경우는 保險料 集金은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기업주에 의한 급여자동이체, 또는 대표자에 의한 일괄 수금납입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회사와 단체 또는 직역노동조합”등과 “보험료 집금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며, 회사는 집금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에 團體 또는 職域 勞動組合 등에 대하여 集金한 保險料의 비율에 따라 集金事務費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때 集金事務費는 保險料 納入期間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기간별로 최소 0.5%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긴 경우 5.5%나 지급하고 있어 豫定維持費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契約者配當의 內容 및 關聯制度의 變遷過程가. 內容

事業方法書上の 契約者配當은 “보통약관 제35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적립)내지 제37조(계약자배당의 지급—급부금 지급개시일 이후의 계약자배당 준비금)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첫번째, 契約者配當準備金の 積立은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算出方法書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每事業年度末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 契約者配當의 支給은 事業方法書中 “契約者配當金支給細則”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나. 日本 損保의 契約者配當制度의 內容 및 發展 推移

日本の 損害保險에서 契約者配當制度가 처음 도입된 것은 '68년 長總商品の 판매와 더불어 滿期契約에 한해 利差配當만을 실시하였다.

契約者配當金を 결정하게 되는 積立資産의 實際運用利益 算出方法은 『고정이율→和半法('80년)→변동금리방식('86년 도입)』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配當率은 상위 수개사가 配當率을 결정하여 적용하면 하위사도 이에 따랐기 때문에 회사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92년 이후 金融自由化에 대한 대응으로 회사별로 차이를 두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配當率은 '92년 실적 기준으로 3년만기(豫定利率 4%)는 2.08%-3.48%, 5년만기(豫定利率 5%)는 1.58%-2.0% 수준이다.

契約者配當을 위한 積立資産의 區分에 대해서는 '68년 長總販賣 당시에는 적립자산의 區分運用만을 실시하다가 '86년 積立型特約商品の 판매와 더불어 特別計定(區分計定)制度를 도입하여 積立資産 運用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7) 約款貸出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貸出은 보통약관 제2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와 제38조(계약자 대출)에 運營方法을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 保險料의 自動貸出納入(振替貸付)에는 연 6%이내의 이자를 부가한다.

두번째, 契約者貸出에는 대출기간 1년당 대출시의 貸出信託(5년만기형) 配當率에 0.5% 및 전사업년도 운용이회율을 가산하고 전전사업년도 1월 1일부터 전사업년도 12월 31일까지의 대출신탁(5년만기형) 이회율을 그 적용일수에 따라 가중평균한 것을 공제한 율에 기초한 利子率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적용이율은 소숫점 이하 두번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세번째 전항에 의한 이자율이 豫定利率에 0.5%를 가산한 율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대출기간 1년에 대해 豫定利率에 0.5%를 더한 비율로 한다.

(8) 代理店 手數料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日本의 長期傷害保險 商品認可時의 특징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豫定事業費率만 인가받는데 반해, 豫定事業費를 구성하는 代理店 手數料도 인가받는다라는 점이다.

代理店手數料는 保險料 納入期間 및 代理店の 種類에 따라 다르며, 또한 계약초년도에는 많이 지급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적게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납입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초년도에는 2%, 차년도에는 1%를 지급하며 납입기간이 20년인 경우 초년도에는 40%, 2차년도 이후에는 매회 2%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保險料를 集금자 또는 集금대행인이 集금하는 경우에는 代理店 手

數料率에서 集금사무비 또는 集금대행수수료율을 차감한 율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9) 集金代行人의 手數料

集金代行 手數料는 保險料 納入期間別로 다르며, 납입기간이 長期일수록 많아진다. 그 비율은 납입기간이 2년인 경우 1%에서 40년의 경우 11%까지 差等 支給하도록 되어 있어 豫定事業費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10) 特別計定

特別計定은 區分計定(separate account)에 대한 것으로 一般保險 資産과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방법서 제30조(특별계정의 설치) 및 제31조(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종류 및 평가 방법)에 규정하고 있다.

가. 概要

特別計定은 契約者配當의 실시를 위해 積立保險에 대해 도입한 것으로 積立保險資産의 運用成果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68년 長總 판매당시에도 長期資産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형태로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積立商品의 획기적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86년의 積立型 特約의 개발과 함께 동상품에 대해 도입한 것이 실질적인 시작이었다고 본다. 현재는 全體 積立商品에 대해 도입되어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5종으로 구분 운용하고 있다.

제1호: 적립보통상해, 가족상해 등

제2호: 재형상품

제3호: 적립개호 등(보험기간이 長期인 상품)

제4호: SUPER형 상품

제5호: 개인연금형

나. 規程 및 內容

사업방법서 제15장(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특별계정의 설치 및 이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① 特別計定の 設置

당회사는 별표 特別計定 財産運用細則에 따라 積立保險料 및 그 運用益과 滿期還給金 및 契約者 配當金を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의 미지급분할금 및 그 운용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特別計定을 설치한다.

② 特別計定에 속하는 財産의 種類 및 評價方法

特別計定에 속하는 財産의 種類는 下記 이외의 것으로 한다.

i) 주식 및 출자

ii)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 등은 제외)

特別計定에 속하는 財産의 評價法은 原價法을 기초로 한다. 단, 당회사의 회계장부는 여타 특별계정 재산 및 이외의 재산과 합산한다.

또한 사업방법서 별표 『特別計定の 財産運用細則』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特別計定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

i) 적립보험료 및 그 운용익

ii) 만기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의 미지급분할금 및 그 운용익

② 特別計定에의 算入 및 離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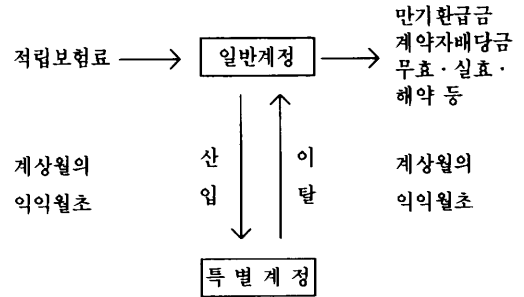
i) 적립보험료의 특별계정으로의 산입: 적립보험료 납입→일반계정→특별계정산입(이익월)

ii) 만기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특별계정으로부터의 이탈: 산입과정과 마찬가지로 일반계정 처리후 특별계정은 이익월에 반영

iii) 무효·실효·해약 등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부터의 이탈: 산입과정과 마찬가지로 일반계정 처리후 특별계정은 이익월에 반영한다.

(그림-2) 特別計定에의 算入·離脫 Flow



③ 特別計定 財産의 把握

i)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은 원가법에 기초를 두고(회사 전체는 저가법)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그 이외의 재산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

ii)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운용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자수입, 배당금, 수익분배금, 상환손익, 매각손익, 평가손 등
기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운용에 의한 제수수료 수입

④ 特別計定에 속하는 財産의 運用方法

i)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과 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그 이외의 재산은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계정으로 바꾸지 못한다.

ii)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운용비율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기타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이용방법서에

정하는 비율로 한다.

- ⑤ 特別計定에 속하는 財産의 運用利率의 算出
方法

$$\text{운용이율} = \frac{\text{발생 운용익}}{\text{특별계정재산의 월말평균 잔고} - \text{입금운용익(월말평균)}}$$

IV. 普通約款의 主要內容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의 普通約款은 총 50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長期傷害保險의 約款體系와 유사하다.

아래에서는 損害保險에서 年金形態로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약관조항이나 일반조항중에서도 우리나라와는 내용이 다소 다르거나 없는 조항인 지정 의사에 의한 진찰, 보험금의 지급, 감정인 및 재정인, 회사의 지급책임(기본급부금의 지급), 기본급부금의 분할지급,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보험료의 변경, 보험계약의 해지 등의 경우에 환급금의 지급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指定醫師에 의한 診察

보통약관 제11조(당회사의 지정의에 의한 진찰 등)에 의하면 被保險者가 傷害로 인해 死亡 또는 身體障害를 당했을 경우에 회사는 費用을 지급하고 指定醫師에 의해 신체의 진찰 또는 사체의 검안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한 때에는 保險金 支給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長期傷害保險 約款에는 후유장애의 산정을 막연히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의 “保險金 支給에

필요한 調査”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11조(당회사의 지정의에 의한 진찰 등)]—

- ① 당회사는 제9조(사고의 통지)의 통지 또는 전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회사가 지정하는 의사에 의해 피보험자의 신체의 진찰 또는 사체의 검안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전항의 우리회사의 신청에 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한 때는 당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保險金의 支給

약관 제12조(보험금의 지급)에 따르면 保險金은 請求日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내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를 마친 후에 지체없이 保險金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長期傷害保險의 標準約款에 따르면 保險金 請求書를 접수한 이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지급시는 그 경과된 기간에 대해서 約款貸出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해당액을 假支給保險金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約款이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2조(보험금의 지급)】

- ①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수취할 자가 제10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신청을 한 날로부터 그 날자를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우리회사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그 기간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끝마친 후에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전항의 보험금의 지급은 당회사가 미리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내에 대해서 일본국 통화로 지급합니다.

(3) 鑑定人 및 財政人

보통약관 제14조(감정인 및 재정인)에 따르면 傷害 또는 後遺障害의 정도에 대해 會社와 保險契約者, 被保險者 또는 受取人間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쌍방이 각 1명씩 선정하는 鑑定人の 판단에 맡기고 감정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의 감정인이 선정하는 1명의 財政인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鑑定人 및 財政인에 의한 분쟁조정방식은 指定醫師에 의한 診察制度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흥미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제14조(감정인 및 재정인)】

- ① 상해 또는 후유장애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수취할 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는, 그 분쟁은 당사자 쌍방이 서면에 의해서 선정하는 각 1명씩의 감정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감정인 사

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쌍방의 감정인이 선정하는 1명의 재정인에게 이것을 재정하게 합니다.

- ② 당사자는 자기가 선정한 감정인의 비용(보수를 포함한다)을 각자 부담하고 그외의 비용(재정인에 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은 반액씩 이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4) 年金의 支給

年金의 支給은 보통약관 제16조(당회사의 지급 책임—기본급부금의 지급)에 규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중 사망했을 경우 보증기간내에는 基本給付金 全額을 지급하고 보증기간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는 保證期間付 有期型和 정해진 기간동안 생사에 관계없이 확정금액을 지급하는 確定型 2가지로 나뉜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生命保險에서는 “年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반해,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에서는 약관의 용어에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지급개시시점 이후 만기직전까지 年金式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中途還給金,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은 滿期還給金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日本의 생·손보 영역구분상 保險期間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保險期間 50년까지의 형태로 年金型商品을 개발할 수는 있으나 생·손보 영역과 가입자 보호차원에서 “年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된다.

—【제16조(당회사의 지급책임 - 기본급부금의 지급)】—

- ① 우리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기재의 급부금 지급개시일(이하 『급부금 지급개시일』이라 한다)이후, 보험증권 기재의 급부금 지급일(이하 『급부금 지급일』이라 한다)에 중도환급금(최종 급부금지급일에 대해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중도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이하 『기본급부금』이라 한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어느쪽이라도 기본급부금을 수취할 자(이하 『보험금수취인』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회사는 급부금 수취인에게 전항의 기본급부금을 지급합니다. 급부금 수취인의 지정이 없는 때는 보험계약자가 급부금 수취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합니다.
- ③ 기본급부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아래표 및 제17조(기본급부금의 지급)부터 제19조(기본급부금의 청구)까지에 정한 것을 따릅니다.

종류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수취인										
보증기간부유기형	① 급부금지급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때	(1) 지급방법이 정액지급인 경우 <table><tr><td>각회의기본급부금 지급액</td><td>별표 1에 따라 계산된 제1회 기본급부금액(이하 제1회 기본급부금액이라 한다)</td></tr></table> (2) 지급방법이 정액체증의 경우 <table><tr><td>제1회 기본급부금 지급액</td><td>제1회 기본급부금액</td></tr><tr><td>제2회 이후의 기본급부금 지급액</td><td>전회의 기본급부금액에 제1회의 기본급부금액의 5%상당액을 가산해서 얻은 금액</td></tr></table> (3) 지급방법이 정율체증의 경우 <table><tr><td>제1회 기본급부금 지급액</td><td>제1회 기본급부금액</td></tr><tr><td>제2회 이후의 기본급부금 지급액</td><td>전회의 기본급부금액에 전회의 기본급부금액의 5%상당액을 가산해서 얻은 금액</td></tr></table>	각회의기본급부금 지급액	별표 1에 따라 계산된 제1회 기본급부금액(이하 제1회 기본급부금액이라 한다)	제1회 기본급부금 지급액	제1회 기본급부금액	제2회 이후의 기본급부금 지급액	전회의 기본급부금액에 제1회의 기본급부금액의 5%상당액을 가산해서 얻은 금액	제1회 기본급부금 지급액	제1회 기본급부금액	제2회 이후의 기본급부금 지급액	전회의 기본급부금액에 전회의 기본급부금액의 5%상당액을 가산해서 얻은 금액	급부금수취인
	각회의기본급부금 지급액	별표 1에 따라 계산된 제1회 기본급부금액(이하 제1회 기본급부금액이라 한다)											
제1회 기본급부금 지급액	제1회 기본급부금액												
제2회 이후의 기본급부금 지급액	전회의 기본급부금액에 제1회의 기본급부금액의 5%상당액을 가산해서 얻은 금액												
제1회 기본급부금 지급액	제1회 기본급부금액												
제2회 이후의 기본급부금 지급액	전회의 기본급부금액에 전회의 기본급부금액의 5%상당액을 가산해서 얻은 금액												
	② 보험계약이 급부금 지급개시일 이후 보험증권기재의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중에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실효된 때 (제13조에 정한 종류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음)	제34조(보험계약의 해제 등의 경우의 환급금의 지급)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보증기간중에 지급될 기본급부금중에 미지급된 것의 현가. 보증기간 경과후에 지급될 기본급부금의 현가는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급부금수취인(수취인 사망시 법정 상속인)										

확정 형	① 급부금지급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때	(1) 지급방법이 정액지급인 경우 <table border="1"> <tr> <td>각 회의 기본급 부금 지급액</td> <td>제1회 기본급부금액</td> </tr> </table> (2) 지급방법이 정액체증의 경우 <table border="1"> <tr> <td>제1회 기본급 부금 지급액</td> <td>제1회 기본급부금액</td> </tr> <tr> <td>제2회 이후의 기본급부금 지 급액</td> <td>전회의 기본급부금액에 제1 회의 기본급부금액의 5%상 당액을 가산해서 얻은 금액</td> </tr> </table> (3) 지급방법이 정율체증의 경우 <table border="1"> <tr> <td>제1회 기본급 부금 지급액</td> <td>제1회 기본급부금액</td> </tr> <tr> <td>제2회 이후의 기본급부금 지 급액</td> <td>전회의 기본급부금액에 전회 의 기본급부금액의 5%상당 액을 가산해서 얻은 금액</td> </tr> </table>	각 회의 기본급 부금 지급액	제1회 기본급부금액	제1회 기본급 부금 지급액	제1회 기본급부금액	제2회 이후의 기본급부금 지 급액	전회의 기본급부금액에 제1 회의 기본급부금액의 5%상 당액을 가산해서 얻은 금액	제1회 기본급 부금 지급액	제1회 기본급부금액	제2회 이후의 기본급부금 지 급액	전회의 기본급부금액에 전회 의 기본급부금액의 5%상당 액을 가산해서 얻은 금액	급부금 수취인
	각 회의 기본급 부금 지급액	제1회 기본급부금액											
제1회 기본급 부금 지급액	제1회 기본급부금액												
제2회 이후의 기본급부금 지 급액	전회의 기본급부금액에 제1 회의 기본급부금액의 5%상 당액을 가산해서 얻은 금액												
제1회 기본급 부금 지급액	제1회 기본급부금액												
제2회 이후의 기본급부금 지 급액	전회의 기본급부금액에 전회 의 기본급부금액의 5%상당 액을 가산해서 얻은 금액												
② 보험계약이 급부금 지급개시 일 이후 보험기간중에 피보 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실효 된 때 (제13조에 정한 종료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음)	제34조(보험계약의 해제 등의 경우의 환급금의 지급)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보험기간중에 지급될 기본급부금중에 미지급된 것의 현가]	급부금 수취인 (수취인 사망시 법정상 속인)											

(5) 基本給付金の 分割支給

基本給付金の 分割支給은 기본급부금이 매년 1회씩 年金形態로 지급되는 것을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년 2회, 년 4회 또는 년 6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나 매월 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生命保險의 年金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 있다.

(6) 保險料의 自動貸出納入

保險料의 自動貸出納入은 우리나라 損害保險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조항으로 제2회 이후의 保險料를 猶豫期間 滿了日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미리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기납입한 보험료 부분으로부터 自動貸出하여 납입토록 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제23조(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 ① 제21조(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계약의 효력)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제2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미리 반대의 신청이 없는 한,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예기간의 만료일에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해

서 보험료의 납입에 충당하고, 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합니다. 다만, 당회사가 대출을 행하는 이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와 이것에 부가된 본조 2항의 이자의 합계액이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의 납입이 행해진 것으로 해서 계산한 환급금(이전의 본조 및 38조(계약자대출)의 대출금이 있는 때는 그 원리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합니다)을 넘지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전항의 대출금의 이자는 당회사 소정의 비율(년 6%이내)에 따라 유예기간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다음 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에 대해서 계산하여 다음 유예기간의 만료일에 원금에 산입됩니다.

③ 본항의 대출금이 있는 때는 그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서 당회사는 당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또는 다음 각호의 경우의 환급금으로부터 본조의 대출금의 원리합계액을 차감합니다.

(1) 제34조(보험계약의 해제등의 경우 환급금의 지급)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제45조(보험계약의 내용의 변경-기본급부금액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할 경우

④ 급부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본조의 대출금의 원리합계액이 반환되지 않은 때는 당회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기본급부금액을 감액해서, 감액된 부분의 환급금을 대출금의 원리합계액의 반환에 충당합니다. 다만, 감액후의 기본급부금액이 당회사 소정의 금액에 미달한 때는 급부금 지급개시일에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해서, 제34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으로부터 대출금의 원리합계액을 차감해서 얻은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7) 保險料의 變更

보통약관 제24조(보험료의 개정)에 따르면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가 개정되고 보험료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개정된 전날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익보험년도 이후 보험금액 및 기본급부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다.

—[제24조(보험료의 개정)]—

① 보험기간 중도에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가 개정되고 보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회사는 개정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익보험년도(이하 본조에 대해 익보험년도라고 한다)이후, 보험금액 및 기본급부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합니다.

② 전항의 기본급부금액의 감액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미리 반대의 신청이 있을 때는 보험계약자는 익보험년도의 초일(이하 본조에 대해 납입기간이라 한다)까지, 당회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이하 차액보험료라 한다)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차액보험료의 납입은 납입기간이 속하는 익월말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해서, 차액보험료가 유예기간내에 납입되지 않을 때는 보험계약은 유예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8) 保險契約의 解除 등의 場合의 還給金의 支給

保險契約이 無效 또는 失效의 場合 혹은 解除된 場合 還給金의 支給方法은 年金形態의 基本給付金이 지급되기전까지는 통상적인 長期損害保險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기본급부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는 형태에 따라 다르다. 즉 무효 또는 해제의 사유가 급부금 지급개시일 이후 보증기간중에 생긴 때에는 그 이후의 保證期間(확정형의 경우는 보험기간)에 지급될 基本給付金을 소정의 비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며, 保證期間付 有期型의 경우 보증기간 경과후에 지급개시될 기본급부금 상당액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V.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 算出基礎의 主要內容

保險料 算出基礎에 대해서는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및 예정계약소멸율 기본급부금액 및 급부금원자 계산방법, 보험금액, 보험료, 무효·실효·해약 환급금, 보험료의 개정 또는 보험계약의 이동 계산 등에 대한 算出根據를 명시하고 있다. 責任準備金 算出基礎부분에 대해서는 責任準備金의 算出方法, 契約者配當 準備金의 算出方法 등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개략적인 내용이나特徵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保險料 算出基礎

(1) 豫定損害率

豫定損害率は 보험금액 1,000원당 연간 0.4948엔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리스크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10% 이내의 인상 또는 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예정손해율은 보험금액 1,000엔당 최저 0.4453엔에서 0.5443엔까지 부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長期傷害保險의 경우 가입금액 1원당 최저 0.00099원에서

0.0025원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豫定事業費率

우리나라 長期損害保險의 경우 豫定事業費率은 新契約費, 維持費, 收金費로 나눠 總量만 認可를 받고 있는 반면, 日本에서는 우리나라의 新契約費, 維持費에 해당하는 社費와 代理店 手數料率로 크게 이분하여 인가받는다.

이중 社費는 新契約費와 維持費로 나뉘며, 신계약비는 평균보험금액 현가 1,000엔에 대해 0.3433엔~0.4195엔으로 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초년도 영업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비율로서 결정되는데 반해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은 保險金額 現價基準으로 부가함으로서 가입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신계약비의 財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維持費는 보험금액비례부분(β_1), 보험료비례부분(β_2), 기본급부금액비례부분(β_3)의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부가하고 있다.

代理店手數料率은 모집수수료율(γ_1)과 집금수수료율(γ_2)로 나뉘며, 모집수수료율은 제1차년도 보험료 기준으로 납입기간별로 1.03%에서 51.5%까지 차등 부가한다. 집금수수료율은 매회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납입기간별로 1.03%에서 11.33%까지 차등 부가한다.

(3) 豫定利率 및 豫定契約消滅率

豫定利率은 연 5.5%로 하며, 豫定契約消滅率은 기본급부금 지급개시전 및 보증기간중의 보험금액 및 기본급부금에 관한 부분은 연 0.04%로 하고, 보증기간 경과후의 보험금액 및 기본급부금에 관한 부분은 性別 및 年齡別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즉 예정계약소멸율은 당 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닌 疾病 死亡 등으로 인한 契約消滅 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4) 基本給付金額 및 給付金 原資

基本給付金額 및 給付金 原資는 연금 및 연금원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회 기본급부금액 1에 대해, 급부금 지급개시후 제 t 년도제의 기본급부금액(rM), 연 π 회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기본급부금액 분할액($rM(\pi)$) 및 급부금원자 등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의하고 있다.

(5) 保險金額

保險金額의 計算은 초년도 보험금액 비율(μ)은 0.3으로 하고, 차년도 이후 보험금액(A_t)은 제1회 기본급부금액 1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_t = \begin{cases} A_x \times \{\mu + (1-\mu) \times (t-1)/(k-1)\} & (t \leq k) \\ A_x & \end{cases}$$

$$A_x = F/0.7$$

여기서 k 는 보험료 납입기간,

F 는 급부금 원자임.

(6) 無效・失効・解約還給金

還給金은 제1회 기본급부금액 1에 대해 해약환급금 A 표, 해약환급금 B 표, 급부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失効・解約된 경우의 還給金으로 세분하여 계산방법을 명기하고 있다.

(7) 保險料率의 改正 또는 保險契約의 移動의 計算 등

保險料率의 改正 또는 保險契約의 移動의 計算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기간중과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후로 나누어 계산방법을 명기하고 있다.

2. 責任準備金 算出方法書

(1) 責任準備金の 算出方法

責任準備金の 算出은 제1회 기본급부금액 1을 기준으로 하여 제 t 보험년도말의 保險料 積立金, 제 t 사업년도말의 保險料 積立金, 未經過保險料, 보험요율의 개정후 또는 보험계약의 이동후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의 계약, 이상위험 준비금, 사업년도말 책임준비금 등으로 나누어 계산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2) 契約者配當準備金の 算出方法

契約者配當準備金の 算出方法은 契約者配當準備金の 積立方法과, 契約者配當準備金の 算出方法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VI. 맺음말

日本の 年金支給式 積立傷害保險은 保險期間이 최고 50년, 年金支給期間이 20년인 確定期間付 年金으로, 純粹年金인 終身年金으로는 영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즉 日本에서는 長期損害保險의 영위에 대해 損・生保間 공식적인 영위기준은 없지만 상품자체로서 보면 급부명칭에 "年金"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며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가입하기에는 실익이 적은 제한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의 통상적인 기업체의 퇴직 연령이 60세 전후이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全社 經驗生命表에 따른 60세 남자의 平均餘命이 20년(일본인 남자의 경험생명표상 平均壽命은

75세임)임을 감안한다면 은행이나 신탁 등에서 영위하는 연금(확정기간부 연금)과 동일하여 年金으로서 판매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長期損害保險 商品開發基準”에 따라 保險期間이 15년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年金型商品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

라서 本考에서는 個人年金型 商品의 도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年金支給式 積立傷害 保險의 基礎書類에 대한 실무적 분석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고가 손해보험 각사 실무담당자들의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